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20재다214 소유권말소등기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C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다265680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4. 29.

주 문
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재심청구이유를 본다.

원고(재심원고)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.

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,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

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노태악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김재형
--	-----	-----

주심	대법관	민유숙
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이동원
--	-----	-----